

시간선택제 일자리 핸드북

❖ 목 차 ❖

1.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개요 1
2. 시간선택제 일자리 관련서식 5
3. 시간선택제 일자리 Q & A 14
4. 지역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센터 연락처 .. 22

2015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① 사업목적

-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통해 결혼·출산·육아 등으로 재취업을 꿈꾸는 치과의료 인력(페이닥터,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치과의료기관 전반에 걸친 인력)에 대하여 폭넓은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함.

※ 지원사업상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로서 동 지원사업의 창출 지원 승인을 받은 일자리를 말함

2. 지원 내용

① 지원요건

- ① (근로조건)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4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말함)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② (차별금지) 사업주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에 대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통상 근로자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비례보호 원칙 적용)

- ③ (고용유지)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이 3개월 이상

- ④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로서 승인받은 근로조건 등 준수

②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사업주가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사업 외에 인건비를 지원 받은 경우

③ 지원사업

- (신규창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신청유형) ① 신규창출(최저임금 120% ~ 130% 미만)
② 신규창출(최저임금 130% 이상)
③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④ 근로조건 개선

※ 다만,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3명까지 지원하며, 4대 고용보험 가입자 수의 60%까지 채용가능)

시간선택제 일자리(신규창출 · 전환 · 근로조건 개선) 지원사업

1 시간선택제 신규창출 지원

- (사업목적) 근무체제 개편 또는 새로운 직무 개발 등을 통해 고용이 안정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원하는 근로자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
 -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 다만 정부 또는 자체단체로부터 임금을 지원받는 근로자는 제외
- (지원요건)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중소기업은 120%) 이상 임금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④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사용)
 - 최근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어야 함.(일용근무자로 근무한 경우는 가능)
- (지원내용) 임금의 50%를 월 80만원 한도(대기업은 월 60만원 한도, 최저임금 120%~130% 미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월 40만원 한도) 지원
 -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간접노무비 1인당 월 10만원 추가 지원

《 2015년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구 분	지원요건		지원내용		
	공통요건	차등요건	지원수준(한도)		기간
대기업	① 무기계약직 신규고용 ② 주 15~30시간 근로 ③ 4대 사회보험 가입 ④ 통상근로자와 차별금지 등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60만원)	-	1년
중소기업 (우선지원 대상기업)		최저임금 130% 이상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80만원)	간접노무비 월 10만원 추가지원	
		최저임금 120%~ 130% 미만 지급한 경우	임금의 50% (월 40만원)		

2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사업목적)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시간선택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고, 일과 삶의 조화에 기여

①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지원대상)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필요(자녀 보육, 퇴직준비, 학업, 간병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전환사유가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시간선택제로의 전환(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 인사규정 등)를 마련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간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20시간(4주 평균)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함.
 - 전환사유 해소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 보장
- (지원내용)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 지원

- (전환장려금)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근로시간 비례임금보다 추가 지급한 임금, 전환수당 등)의 50%를 월 5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전환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50%를 월 60만원 (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②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

- (지원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남녀불문)
- (지원기간) 최대 1년
- (지원내용) 월 통상임금의 60%를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③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지원금 부여)

- (지원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허용하는 사업주
- (지원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종료 후 30일 계속 고용
- (지원내용) 최대 1년 한도로 단축 기간 중 지원금 지급
 - 육아휴직 월 2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15~30시간), 월 20만원 지원

* '15. 7월부터 육아휴직 월 2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월 30만원으로 변경 예정

지원금의 50%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시 지급

④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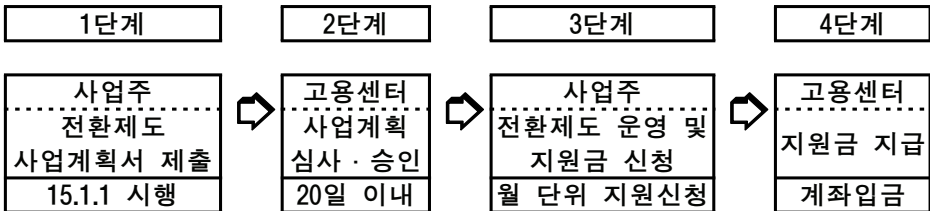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사업주

- (지원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30일 이상 허용하고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지원기간)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에 대해 지급
- (지원내용)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30만원 지급

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 (지원대상)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 소속 55세 이상 근로자
- (지원요건)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정년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되고, 임금이 30% 이상 줄어든 자
- (지원기간) 최고 임금(피크임금) 대비 70% 이하로 감액된 부분을 임금이 감소된 날부터 최장 5년간 연 500만원까지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전환제도 도입 및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 지원절차 》



③ 시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직 전환) 지원

- (사업목적)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 기업 사업주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기존의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의 고용안정 및 처우 개선 유도
- (지원대상) 6개월 이상 고용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① 무기계약직 전환 ② 최저임금 120% 이상 지급 ③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로 ④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균등대우(근로시간비례 원칙 적용)하여야 하며,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1주간 12시간 이내이어야 함.(초과시 당월분 임금은 지급하지 않음)
- (지원내용) 근로조건이 개선된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 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센터) ⇒ 사업계획서 심사·승인(고용센터 → 사업주) ⇒ 무기계약직 전환(사업주) ⇒ 지원금 신청(사업주 → 고용센터) ⇒ 심사 및 지원금 지급(고용센터 → 사업주)

[illegible]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자원사업」 사업계획서

☞ 서식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임

1. 기업체 현황

○ 설립일: 년 월 일

○ 사업현황

사 업 내 용	
주요 생산품	

○ 재무상태(최근 3년)

(단위: 원)

구 분	매출액	총자산
2012년		
2013년		
2014년		

○ 고용현황: 총 명 근무 중

-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 분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 등*	기타 (일용근로자 등)	계
남	명	명	명	명	명
여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 파견 등: 우리 회사 소속 직원은 아니지만 용역 및 파견 등을 통해 우리 회사에서 근로하는 근로자

- 주된 소정근로시간: 주당 시간

※ 우리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가장 많이 해당하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 근로형태별 근로자 현황

구 분	남	여	계
주된 소정근로시간 이상	명	명	명
주된 소정근로시간 미만	명	명	명
계	명	명	명

○ 근무제도 현황

구 분	내 용	해당 직무
통상근무	주 0일, 0시간	사무직, 판매직
교대근무	0조 0교대	생산직
유연근무	재택, 시차출퇴근 등	연구직

※ 우리 회사에서 운영 중인 근무제도에 대한 간략 제시

○ 근로자별 근속현황

구 분	계	3개월 미만	3~6개월 미만	6개월~1년 미만	1년~3년 미만	3년 이상
인원 수						

2.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필요성 및 효과

○

※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전환하는 사유와 창출·전환에 따른 사업장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처방안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

예) 고객들에게 보다 높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간선택제 적합업무를 고려한 결과, 특정시간에 업무가 과중되는 고객지원 및 웹디자인 업무에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함

- (현황) 주 40시간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시적으로 연장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여,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고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하여 이를 해소하려 하였으나, 기존 근로자들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어 기존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설득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에 따른 효과 등을 안내하여 현재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 (필요성)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절감된 비용을 인력 확충에 재투자하여 구직자들에게 새로운 고용창출의 기회제공과 더불어 특정시간대에 집중되는 업무에 신규인력을 투입함으로써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를 완화시키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함
- (향후계획) 시간선택제 일자리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 및 운영기준 등을 재정비하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적합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간선택제 인력을 늘리고 안정적인 근무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

3. 시간선택제 창출 및 전환 세부계획

○ 신규창출 계획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담당 업무	신청 인원	주당 소정근로시간	주당 근로일 수	근로 시간대	월 임금수준			복리 후생	채용 시기	모집 방법
						계	고정 급여	기타			
☐ 120% ~ 130% 미만 ☐ 130% 이상	000	00명	00시간	0일	10:00~17:00	00원	00원	00원	자녀 학자금	6월 부터	워크넷 등록
비고	예) 월요일 10:00~13:00, 화요일 15:00~18:00										
합계	00명										

※ 작성 방법

- 최저임금 대비 임금수준: 최저임금 대비 월 임금의 수준을 기재
 - '15년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인 경우 최저임금 100% 수준 월 임금은 874,660원이며, 120% 수준은 1,049,590원이며, 130% 수준은 1,137,060원임
 - ※ 120%~130% 미만은 우선지원 대상기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최저임금 130% 이상은 월 80만원 한도로 지원, 최저임금 120%~130% 미만은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
- 담당업무: 고용하게 될 근로자가 맡을 업무를 간단하게 기재(예, 경리, 간호, 간호보조 등)
- 신청인원: 고용할 예정인원을 기재하되, 지원인원 한도 범위 내에서 기재
 - 이전에 승인을 받은 사업장의 경우 지원인원 한도는 누계임을 감안하여 기재
- 주당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으로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재
- 주당 근로일수: 4주간을 평균한 1주당 근로일수 기재하며, 비고란에 요일을 기재
- 근로시간대: 주된 근로시간대를 기재하고, 요일별로 다른 경우 비고란에 상세하게 기재

- 월 임금수준: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임금 또는 수당으로,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대가로 받는 금품(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및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일·숙직비 등)을 제외하며,
 - 연간 지급예정액을 월로 평균한 금액을 기재
- ※ 월 임금수준은 최소금액을 기재해야 함(월 임금수준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월 임금수준을 인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 이전에 고용센터로부터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고정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기타: 1개월 이상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
-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제공될 복리후생 항목 기재(임금 또는 수당은 제외)
- 채용시기: 신청인원에 대한 채용예정일을 월 단위로 기재
- 모집방법: 근로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기재(예, 워크넷 등록, 무가지 공고, 사내홍피 공고 등)
- 비고: 근로시간대, 복리후생, 수습계획 등 기재되지 않은 근로조건을 자세히 기재

○ 시간선택제 전환 계획

구 분	전환 후 근로조건 등		
전환제도	취업규칙 등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마련 계획(이미 제도 시행 여부 등) * 전환기간, 전환사유, 전일제 복귀 규정 등		
근로조건	전환 전·후 시간당 임금, 식비, 교통비, 각종수당 등 비교 * 시간당 임금수준이 전환 전과 비교하여 감소되지 않아야 함		
그 밖의 제도 적용	승진 및 퇴직금 등 제도 운영 방법 *전환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포함하여 적용 *퇴직금 계산시 전환기간을 별도 산정하여 합산		
참고사항	기타 참고사항 등 있는 경우 기재 * 현재 전환제도 활용인원((제도 시행 중인 사업장), 제도 개선 방안 등		
연간 활용 예상 인원	_____ 명	활용 예상 주요 직무	예) 경리·회계, 검수 등

* 이미 전환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은 전환제도 내용과 보완·변경계획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기재

○ 근로조건 개선 계획

직종	현재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수	무기계약 개선 신청인원	개선 전			개선 후		
			계약 기간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 시간	무기계약 개선 예정기간	월 임금수준	주당 소정근로 시간
합계	명	명						
사무직		00	0개월	0000원	00시간	*15.3월 ~9월	0000원	00시간
생산직								
상담직								
.								
비고	'월 임금수준'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의 증감 세부 내역 예) ① 기본급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② 교통비 월 10만원 상승(000원 → 000원) ③ 상여금 월 5만원 상승(3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2개월마다 기본급의 100%) *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항목은 1개월 단위로 환산							

※작성방법

- 월 임금수준은 근로계약서상 임금, 상여금 등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기재(월 임금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승인 후 근로조건 개선 대상 근로자 수의 추가가 필요한 때에는 개선이행 기간(6개월 이내, 6개월 연장가능) 내에 변경 신청할 수 있음
- 직종별 근로조건이 다양할 경우, 직종별 최저 근로조건을 기재하거나 직종별 전환 대상 자 명단을 모두 제출할 수 있음

4. 동일/유사 직무 근로조건

담당업무	주당 소정근로시간	월 임금	복리후생	비고

※ 신청인원에 해당하는 직무와 동일·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재 (신규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을 신청한 경우에만 작성)

☞ 서식안에 기재된 내용들은 예시이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승인되었더라도 승인이 취소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표준근로계약서

_____(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
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무장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__시__분부터 __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__요일
6. 임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이
의
의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소 :

대표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명 : (서명)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 시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00시 00분 ~ 00시 00분

○ 주휴일 : 매주 __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_____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_____원(내역별 기재), 없음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_____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월요일

○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가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 (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시간선택제

Q & A

1. 신규형

2. 전환형

3. 근로조건

지원형

KDA 대한치과의사협회
KOREAN DENTAL ASSOCIATION

시간 선택제 Q & A

○ 신규형 Q & A

Q1. 신규창출 지원 대상은?

A1.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① 공공기관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
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시간 선택제 Q & A

● 신규형 Q & A

Q2. 신규창출 지원 요건은?

A2.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또는 시간선택제 직무개발 등을 통해 실업자를 시간선택제로 새로 채용

(요건) ① 무기계약

② 최저임금 130%이상

③ 주 15시간 ~ 30시간 이하

④ 사회보험 등 기본 근로조건 보장

⑤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X

- 승인일로부터 9개월 이내 채용, 사업주 배우자 제외,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 X

시간 선택제 Q & A

● 신규형 Q & A

Q3. 신규창출시 지원내용 및 기간은?

A3. 승인받은 참여신청서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함

(조건) ① 130% 이상

= 월 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② 120% 이상 ~130%미만

=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시간 선택제 Q & A

○신규형 Q & A

Q3. 신규창출시 지원내용 및 기간은?

A3. 승인받은 참여신청서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수준을 달리함

(조건) ① 130% 이상

= 월 8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② 120% 이상 ~130%미만

= 월 40만원, 간접노무비 10만원

시간 선택제 Q & A

○신규형 Q & A

Q4. 인건비 지원을 위한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A4. 지원대상 근로자의 실 고용유지 기간은 1개월 이상, 이후 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

Q5. 지원인원 한도는?

A5.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의 30%(우선지원 60%) 한도 단, 최소 지원인원 한도는 소속 근로자수와 관계 없이 3명

시간 선택제 Q & A

○신규형 Q & A

Q6. 그 외 알아야 할 사항은?

A6-1.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승인통지를 받기 전 채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

A6-2. 지원대상 근로자가 지원기간 중 퇴사할 경우, 신규로 지원요건을 갖춘 근로자를 채용하면 계속 지원

* 당초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전체 지원기간 범위 내에서 지원

A6-3.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1주간 12시간 이내로 한정

* 주당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시간 선택제 Q & A

○전환형 Q & A

Q1. 전환 지원대상은?

A1.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계획을 승인 받은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① 공공기관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전환대상 근로자는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간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30시간(4주 평균)을 초과하는 근로자로, 전환일 이전까지 동일 사업장에서 최소 6개월 이상 고용 되어야 함

시간 선택제 Q & A

● 전환형 Q & A

Q2. 전환 지원요건은?

A2.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마련

: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시간선택제 전환 관리규정 마련

>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 운영(전환 시 근로조건, 전환 사유, 최대 전환 기간 등) 및 근로자 청구에 따른 전일제 복귀 보장(전환전과 차별금지)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시간 선택제 Q & A

● 전환형 Q & A

Q3. 전환 시 지원 내용 및 한도는?

A3. 전환 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업종별 기업규모에 따라 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 전일제 → 시간선택제 전환장려금 등을 1년간 지급

- 1) 전환 장려금 : 시간비례 임금보다 추가지급한 임금수당 등의 50%
- 2) 간접 노무비 : 전환제도 운영에 따른 노무비용 1인당 20만원
- 3) 대체인력 인건비 : 대체인력 채용시 인건비의 50%

시간 선택제 Q & A

● 전환형 Q & A

Q4. 그 외 알아야 할 사항은?

A4-1. 시간선택제 전환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원금은 전환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

• 동일 근로자가 여러 번 전환할 경우에는 전환기간을 합산하여 1년 범위 내에서 지원

A4-2. 시간선택제 전환 후 연장근로시간은 1주간 12시간 이
내에서 지원

• 1주간 12시간을 초과한 주가 포함되면 지원 X

A4-3. 사업장별 지원인원 제한 없음

시간 선택제 Q & A

● 근로조건개선 Q & A

Q1. 전환 지원대상은?

A1. 참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모든 사업주
(지원제외) ① 공공기관

②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
유지조치를 하여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
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대상 근로자 :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고용기간 6개월 이상)

시간 선택제 Q & A

● 근로조건 개선 Q & A

Q2. 지원요건은?

A2. 사업주가 해당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고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간제인 시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 1) 무기계약직 전환
- 2) 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 3) 주15시간 ~ 30시간 이하 근로
- 4)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 근로조건 보장
- 5)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X

시간 선택제 Q & A

● 전환형 Q & A

Q3. 지원 내용 및 한도는?

A3. 시간선택제로 전환(최저임금 120%이상 지급, 4대 사회보험 가입 등)하는 사업주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

시간 선택제 Q & A

● 전환형 Q & A

Q4. 그 외 알아야 할 사항은?

A4-1. 무기계약직 전환일로부터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 지원금은 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

A4-2. 무기계약 전환 후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 근로는 1주간 12시간 이내이어야 함

[붙임]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용센터 연락처

관서명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서울청	서울고용센터	중구,종로구,동대문구	02-2004-7371
	서초고용센터	서초구	02-580-4971~5
서울강남	서울강남고용센터	강남구	02-3468-4711~5, 4708
서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	강동구,성동구,송파구	02-2142-8428
서울서부	서울서부고용센터	마포구,용산구,서대문구,은평구	02-2077-6001
서울남부	서울남부고용센터	영등포구,강서구,양천구	02-2639-2411
서울북부	서울북부고용센터	노원구,성북구,강북구,종각구,도봉구	02-2171-1803
서울관악	서울관악고용센터	구로구,금천구,동작구,관악구	02-3282-9389
중부청	인천고용센터	중구,동구,남구,남동구,연수구,옹진군	032-460-4811~5
인천북부	인천북부고용센터	서구,부평구,계양구,강화군	032-540-5742~3, 5751
부천	부천고용센터	부천시	032-320-8972~3
	김포고용센터	김포시	031-999-0941
의정부	의정부고용센터	의정부,포천,구리,양주,남양주	031-828-0835
고양	고양고용센터	고양시,파주시	031-920-3943
수원	수원고용센터	수원시,용인시,화성시	031-231-7856
성남	성남고용센터	성남시,이천시,하남시,여주시,이천시	031-739-3171
안양	안양고용센터	안양시,과천시,광명시,군포시,의왕시	031-463-0765
안산	안산고용센터	안산시,시흥시	031-412-6944
평택	평택고용센터	평택시,안성시,오산시	031-646-1263~4
춘천	춘천고용센터	춘천시,화천군,홍천군,양구군,인제군,가평군	033-250-1930
원주	원주고용센터	원주시,횡성군	033-760-0960
강릉	강릉고용센터	강릉시,속초시,고성군,양양군	033-610-1913
태백	태백고용센터	태백시,삼척시,동해시,울진군	033-550-8654
영월	영월고용센터	영월군,정선군,평창군	033-371-6263
부산청	부산고용센터	연제구,진구,동구,남구,중구,서구,사하구,영도구	051-890-2025
부산동부	부산동부고용센터	동래구,금정구,해운대구,수영구,기장군	051-760-7219
부산북부	부산북부고용센터	사상구,강서구,북구	051-330-9951~4
울산	울산고용센터	울산시,울주군	052-228-1925
창원	창원고용센터	창원시,의령군,창녕군,함안군	055-239-0932
양산	김해고용센터	김해시,밀양시	055-330-6436
	양산고용센터	양산시	055-379-2422
진주	진주고용센터	진주,사천,산청,함양,합천,거창,남해,하동	055-760-6754
통영	통영고용센터	통영시,거제시,고성군	055-650-1814
대구청	대구고용센터	남구,중구,동구수성구,경산,영천,달성군,청도	053-667-6032
대구서부	대구서부고용센터	서구,달서구,성주,고령	053-605-6463

관서명	고용센터명	관할구역	연락처
포항	포항고용센터	포항,영덕,울릉도	054-280-3032
	경주고용센터	경주	054-778-2516
구미	구미고용센터	구미,철곡	054-440-3361
영주	영주고용센터	영주,봉화	054-639-1135
	문경고용센터	문경,상주	054-559-8231
안동	안동고용센터	안동,예천,청송,영양,의성	054-851-8062
광주청	광주고용센터	광주,나주,곡성,화순,담양,영광,함평	062-609-8652
전주	전주고용센터	전주,완주,정읍,남원,무주,진안,장수,임실,순창	063-270-9207
익산	익산고용센터	익산,김제	063-840-6523
군산	군산고용센터	군산,부안,고창	063-450-0653
목포	목포고용센터	목포,영암,장흥,무안,신안,해남,강진,진도,완도	061-280-0541
여수	순천고용센터	순천,광양,여수,보성,고흥	061-720-9138
대전청	대전고용센터	대전,금산	042-480-6013
	공주고용센터	공주,논산,계룡,연기,세종	041-851-8502, 8504
청주	청주고용센터	청주,청원,진천,괴산,보은,증평,옥천,영동	043-230-6714
천안	천안고용센터	천안,아산,예산,당진	041-620-7441
충주	충주고용센터	충주,음성	043-850-4054
	제천고용센터	제천,단양	043-640-9322
보령	보령고용센터	보령,서천,부여,홍성,청양	041-930-6241
	서산고용센터	서산,태안	041-661-5605